

## 2024년도 상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상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다음 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 15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 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

### 1. 사업목적 및 대상과제

#### □ 사업목적

-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,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·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

#### □ 대상과제

- 원자력 분야 기획·정책연구(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·분석 등) 관련 **총 3개 과제(240백만원)**

연번	과제명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(백만원)	기간 (개월)
1	SMR 기술개발 및 지원 방안 법제화 연구	90	9
2	국가 대형가속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	100	10
3	국내 방사선 유해장비의 아태지역 기술이전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	50	8
합계(3개 과제)		240	-

※ 연구과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

※ 과제평가 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 가능

## 2. 신청자격 및 제한

### ○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격

- 「원자력진흥법」 제12조제1항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
- ※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(원기금) 기획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, 연구개발내용이 독립적인 개별과제 형태인 정책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

#### 신청대상기관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### 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제출마감일 기준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,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- 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### □ 신청 및 수행제한

-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
※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- 해당사업은 원자력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, 원자력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조사·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'정책 연구사업'(원자력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 의거)으로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어 연구개발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음  
※ 근거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 제2, 3호

### 3. 신청요령

□ 신청기간 : 2024. 4. 5.(금).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**신청방법**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 상의 국가연구자정보 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 · 갱신 →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에 로그인 → R&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→ 과제 접수 클릭 → 신청공고목록 클릭 → 해당 정부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및 전문 기관(한국연구재단) 검색 → 해당 사업 공고 → 접수 →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

\* (1)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(HWP)과 (2) 기타증빙 1개 파일(PDF)로 총괄주관 /주관 과제별 각각 업로드(공동/위탁은 주관(舊세부)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)

-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-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‘최종확인’ 완료 이후 ‘제출’ 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7일 이상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
-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’에 따라 작성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
### 4. 평가기준

- 평가방법 : 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

※ 평가방법 및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

- 평가지표 : 연구수행능력, 연구목표 및 내용, 연구내용의 적정성,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,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

평가항목	배점
① 제안서와의 부합성(RFP 부합성, 연구목표, 연구내용 등)	40
② 기대성과 및 활용목적의 명확성(정책반영 및 연계성)	30
③ 연구추진 체계·방법·전략 및 연구비의 적정성	15
④ 연구책임자·연구팀의 전문성·연구역량(연구실적·능력, 연구진구성 등)	15
합 계	100

## 5. 기타사항

- (영리기관(기업))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· 부담
  - 참여기업이 영리기관(기업)일 경우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
- 적용 법령 및 규칙
  - 동 사업은 「원자력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」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」 등을 준용한다.

## 6. 문의처

- (온라인 입력 및 제출관련 문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- (과제관련 문의)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
  - 전화 : 042)869-7799 / E-mail : choekyumin@nrf.re.kr